시 민

주무관	방재안전총괄과장	방재안전시설부장	시설국장	도시기반시설본부장
오반교	박상태	박종웅	이광세	01/24 천석현

협 조	
도시철도국장	김준기
도시철도설비부장	정찬웅
도시철도건축부장	김명식
도시철도토목부장	이은상
도시철도공무부장	한동근
도시철도설계부장	박상돈
설비부장	박기형
건축부장	이병석
토목부장	노우성
건설총괄부장	강홍기

문서번호	방재안전시설부-1294
결재일자	2014.1.24.
공개여부	비공개
방침번호	

희망서울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-

중점관리 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시행계획

2014. 1.

도시기반시설본부
(방재안전시설부)

희망서울 서울특별시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		
시민참여 고려사항	● 시 민 :	유 □ ( )	무 ■
	● 이해당사자 :	유 □ ( )	무 ■
	● 전 문 가 :	유 □ ( )	무 ■
	● 옴브즈만 :	유 □ ( )	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	● 법령규정 :	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	
		기타 ■ (건설기술관리법)	무 □
	● 기타사항 :	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	
		홍보 □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	
		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	
		유지관리 비용 □ 바른 우리말 □	무 ■
타자원의 활용	● 중앙부처 :	유 □ ( )	무 ■
	● 민간단체 :	유 □ ( )	무 ■
	● 기 업 :	유 □ ( )	무 ■
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	● 관계기관 :	유 □ ( )	무 ■
	● 민간단체 :	유 □ ( )	무 ■
	● 시산하기관 :	유 □ ( )	무 ■

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시행계획

근로자 보호와 시공상의 안전확보를 위한 『20대 기본항목』을 기 운영 중에 있으나 공사장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

【 20대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방안 】

기존 : 2회 경고, 3회째 벌점부과 ➡ 강화: 1회 위반 시 즉시 벌점부과

- 2014년 시장님 업무보고 시 『안전공사 10계명』 실행방안 -

☐ 중점관리 항목 위반 시 제재강화 방안

○ 근로자 : 원스트라익 아웃제 시행

- 안전모 미착용,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고리 미체결 위반 시 작업장에서 퇴출

○ 『20대 중점관리 항목』 위반 시 서면경고 없이 부실벌점 부과

- 근로자 보호 및 안전시공 기본사항 20개 항목 : 별첨 #1

☐ 적용대상

○ 본부 시행 전 공사장

☐ 부실벌점 부과절차 및 운영방안

○ 부과절차

점검시행 및 20대 항목 위반사항 통보	⇨	벌점 부과계획보고	⇨	사전통지 및 위원회개최	⇨	결과통보
방재안전시설부		공사부서		공사부서		공사부서

○ 안전점검 및 20대 항목 위반사항 통보**(방재안전시설부 ⇨ 공사담당부서)**

- 안전점검결과 20대 항목 위반사항이 적출될 경우 위반 항목 및 내용을 증빙자료(사진)를 첨부하여 공사부서에 통보

○ 벌점 부과계획 보고**(공사담당 부서)**

- 공사부서에서는 20대항목 위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부실벌점 산정
- 벌점 부과계획 보고 (벌점 부과대상, 벌점 점수, 추진일정 등)
- 처리기한 : 20대 항목 위반사실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※ 책임감리가 감리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는 감리책임은 면제

○ 벌점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부실벌점 위원회 구성·개최

- 20대 항목 위반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(벌점부과 대상자에게는 30일간 의견진술 기회부여)
- 벌점부과 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 있을 경우 5명 이상의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(의견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)
- 안전관리위원회를 국별로 상호교차 시행

○ 부실벌점 확정 통지 및 관련부서 통보

- 확정된 벌점을 이해관계인(벌점부과 대상자)에게 통지
- 관련 기관(건설산업정보센터)에 벌점부과 결과 통보

※ 부실벌점 부과절차(부실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등) 및 결과통보는 관련법령(건설기술관리법) 및 지침(국토교통부 벌점제도 운영요령 - 2014.1)에 따르며, 20항목이 벌점측정기준의 " 주요부실내용" 의 항목과 불일치한 사항은 유사항목을 준용하여 조치

□ 행정사항

○ 본 방침서 결정 즉시 시행

○ 부실벌점 부과후 벌점부과 부서에서는 부과사항을 One-PMIS에 등재

첨부 : 20대 중점관리 항목 1부. 끝.

☐ 중점관리항목

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

1.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
2. 고소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
3. 개구부 관리소홀(난간 및 방망·덮개·폭목 미설치)
4. 버팀보,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
5. 작업통로 설치지연 및 추락방지 안전조치 미설치[1], 안전시설 임의 철거
6. 낙하물 방지망 설치위반
7. 작업장 조도기준 미준수[2]
8.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미 조치 및 소화기 미 비치
9.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접지미실시,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및 스토퍼 미설치
10. 밀폐작업장[3] 작업규정 위반(작업허가제 미실시 및 환기, 산소농도측정, 출입자통제 미 실시)

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

1. 시공계획서 미작성 및 감리 검토·승인 없이 임의 시공
2.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미시행 및 관리기관 협의 미 실시
3.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위반
4. 동바리, 비계작업 시공계획서(동바리 구조검토 포함) 미 작성 및 미 준수
5. 토류벽시공(E/A 포함)시 강재(버팀보, 띠장, 앵글 등) 설치지연 및 선행굴착 등 작업순서 위반
6. 2본 이상의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미실시
7.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
8.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
9. 계측기 미설치 및 설치시기 지연, 계측빈도 미준수
10.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, 아웃트리거 미 거치, 장비 허가 검사 미이행, 신호수 미 배치

---

1)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, 불가시는 안전대착용 및 관련 설치 설치
2)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,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(터널표준시방서1.1.2 조명)
3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우물, 수직갱, 터널, 잠함, 피트, 암거, 맨홀, 탱크, 반응탑, 정화조, 침전조, 집수조 등을 말함